

목포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114
----------	-----

1. 개정이유

-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와 본 조례규정을 일치시켜
-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쓰레기에 대하여 처리과정등을 쉽게하여 시민의 편리 도모

2. 주요내용

- 목포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8조의 2 ③항 신설
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할 수 있다.

3. 개정되지 않을시 문제점

- 사업장폐기물(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 사업장)을 배출하는 대형마트, 시장, 관공서등은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즉 종이, 음식물쓰레기, 플라스틱등을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하여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.

4. 검토의견

- 대형마트, 시장, 관공서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(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사업장)중 일반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어 주민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.